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K-성장리더스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명확화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 부.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베어링 수억마련 증권투자신탁(주식)	베어링 <u>K-성장리더스</u> 증권투자신탁(주식)
제 2 부.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베어링 수억마련 증권투자신탁(주식)	베어링 <u>K-성장리더스</u> 증권투자신탁(주식)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명확화	가. (생략) 나. 집합투자지구의 운용구조 베어링 수억마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베어링 수억마련 증권투자신탁(주식)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베어링 수억마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생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가. (현행과 같음) 나. 집합투자지구의 운용구조 베어링 <u>K-성장리더스</u>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베어링 <u>K-성장리더스</u> 증권투자신탁(주식)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베어링 <u>K-성장리더스</u>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현행과 같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p>사항] 베어링 <u>수익마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u> 투자목적: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업종별 대표기업 주식</u>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고, 누적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업종별 대표기업</u>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p> <p><u>업종 대표주의 선정은</u> 집합투자업자의 <u>밸류에이션 모델</u>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선정합니다. 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자산의 80%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 (이하 생략)</p>	<p>사항] 베어링 <u>K-성장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u> 투자목적: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한국대표 성장기업</u>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고, 누적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한국대표 성장기업</u>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p> <p><u>투자대상 종목은</u> 집합투자업자의 <u>자체적인 인덱스 리서치</u>를 통하여 <u>핵심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u>, Buy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선정합니다. 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자산의 80%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명확화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8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의 범위에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목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업종별 대표기업 주식</u> 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8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의 범위에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목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한국대표 성장기업</u> 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p>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며, 누적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p>	<p>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며, 누적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8.가. 자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p>1) 투자 대상 1. 모투자신탁수익증권: 베어링 <u>수익마련</u>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p>	<p>1) 투자 대상 1. 모투자신탁수익증권: 베어링 <u>K-성장리더스</u>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명확화	<p>[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업종별 대표기업</u>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u>업종 대표주의 선정은 집합투자업자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List</u>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선정합니다. 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자산의 80%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 전략적 차원의 자산배분은 매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Financial Templates 등을 이용한 기업분석과 기업탐방을 바탕으로 종목 교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p> <p>* <u>업종 대표주 선정기준</u></p>	<p>[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한국대표 성장기업을</u>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u>투자대상 종목은 집합투자업자의 자체적인 인텔스 리서치를 통하여 핵심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Buying List</u>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선정합니다. 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자산의 80%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 전략적 차원의 자산배분은 매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Financial Templates 등을 이용한 기업분석과 기업탐방을 바탕으로 종목 교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p> <p>* <u>한국 대표 성장기업 선정기준의 예시</u></p>

		<p>1. <u>주요 사업영역에서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u></p> <p>2. <u>업종별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유동성이 확보된 기업</u></p> <p>3. <u>시장평균 이상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u></p> <p>4. <u>시장평균 이상의 영업이익률과 ROE(자기자본수익률)가 양호한 기업</u></p> <p>5. <u>Free Cash Flow (잉여현금흐름)등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 (삭제)</u></p> <p>6. <u>주기적인 IR(기업설명회) 활동, 높은 배당성향 등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기업 (삭제)</u></p> <p>7. <u>국제경쟁력, 탁월한 기술력 및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능력 보유 기업</u></p> <p>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하 생략)</p>	<p>1. <u>한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u></p> <p>2. <u>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거나, 산업내 통합이 이루어지는 기업</u></p> <p>3. <u>시장평균 이상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u></p> <p>4. <u>적절한 시점에서의 유형설비 또는 지분투자를 통하여 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기업</u></p> <p>5. <u>국제경쟁력, 탁월한 기술력 및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능력 보유 기업</u></p> <p>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p>	<p>(생략)</p>	<p>동종유형 총 보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
<p>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p>	<p>(생략)</p>	<p>라.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코리아 셀렉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모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명확화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명확화	가. (생략) 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베어링 <u>수익마련</u>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라.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베어링 <u>수익마련</u>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베어링 <u>수익마련</u> 증권투자신탁(주식) (생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베어링 K-성장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라.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베어링 K-성장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베어링 K-성장리더스 증권투자신탁(주식) (현행과 같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p>베어링 <u>수익마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u> 투자목적: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업종별 대표기업 주식</u>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며, 누적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업종별 대표기업</u>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p> <p><u>업종 대표주의 선정</u>은 집합투자업자의 <u>밸류에이션 모델</u>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선정합니다. 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자산의 80%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 (이하 생략)</p>	<p>베어링 <u>K-성장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u> 투자목적: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한국대표 성장기업</u>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며, 누적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한국대표 성장기업</u>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p> <p><u>투자대상 종목</u>은 집합투자업자의 <u>자체적인 인덱스 리서치</u>를 통하여 <u>핵심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u>, Buy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선정합니다. 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자산의 80%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2 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p>	<p>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명확화</p>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100%이하의 범위에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목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업종별 대표기업 주식</u>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며,</p>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100%이하의 범위에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목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한국대표 성장기업</u>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며, 누적적으로 벤치마크대비</p>

		<p>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자산의 80%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p> <p>전략적 차원의 자산배분은 매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Financial Templates 등을 이용한 기업분석과 기업탐방을 바탕으로 종목 교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p> <p>* 업종 대표주 선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요 사업영역에서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u> 2. <u>업종별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유동성이 확보된 기업</u> 3. <u>시장평균 이상의 매출·영업이익·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u> 4. <u>시장평균 이상의 영업이익률과 ROE(자기자본수익률)가 양호한 기업</u> 5. <u>Free Cash Flow (잉여현금흐름)등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 (삭제)</u> 6. <u>주기적인 IR(기업설명회) 활동, 높은 배당성향 등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기업 (삭제)</u> 7. <u>국제경쟁력, 탁월한 기술력 및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능력 보유 기업</u> <p>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이하 생략)</p>	<p>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자산의 80%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p> <p>전략적 차원의 자산배분은 매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Financial Templates 등을 이용한 기업분석과 기업탐방을 바탕으로 종목 교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p> <p>* 한국 대표 성장기업 선정기준의 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한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u> 2. <u>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거나, 산업내 통합이 이루어지는 기업</u> 3. <u>시장평균 이상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u> 4. <u>적절한 시점에서의 유형설비 또는 지분투자를 통하여 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기업</u> 5. <u>국제경쟁력, 탁월한 기술력 및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능력 보유 기업</u> <p>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2 부.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p>	<p>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p>	<p>(추가)</p>	<p>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동종유형 총 보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p>1) ~ 3) (생략)</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생략)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생략)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현행과 같음)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 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삭제)</p> <p>(현행과 같음) (삭제)</p>

		<p>- <u>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u> <u>세액공제 12%</u> - 해당과세기간에 <u>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u> - 해당 과세기간에 <u>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u>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u>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u> <u>분리과세 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u></p> <p>(생략)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p> <p>(이하 생략)</p>	<p>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p> <p>분리과세 한도: <u>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u> (현행과 같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3 부.1.가. 요약재무정보</p>	<p>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p>	<p>(주식 추가)</p> <p>(신설)</p> <p>(신설)</p>	<p>주1)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9기 0원, 8기 0원, 7기 0원) 주2)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9기 0원, 8기 0원, 7기 0원)</p> <p><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p> <p><주식의 매매회전율></p>
<p>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p>	<p>(생략)</p>	<p>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p>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코리아 셀렉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명확화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명확화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8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며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업종별 대표기업</u> 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8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며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u>한국대표 성장기업</u> 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투자비용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 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코리아셀렉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모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①~③ (생략)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베어링 <u>수익마련</u>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베어링 <u>K-성장리더스</u>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현행과 같음)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 ②~③ (생략) <추가>	①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9 조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 | | | | |
|--|--|--|--|
| | | | <p>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탁 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p> <p>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p> <p>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
|--|--|--|--|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K-성장리더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집합투자기구명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베어링 <u>수익마련</u>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베어링 K-성장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베어링 <u>수익마련</u>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투자신탁으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모자형 ③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어링 <u>수익마련</u>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베어링 코리아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베어링 K-성장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투자신탁으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모자형 ③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어링 K-성장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베어링 코리아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하 현행과 같음)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	① <u>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u>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

	<p>관한 사항 반영</p>	<p>②~③ (생략) <추가></p>	<p><u>하는 행위를 한 경우</u> <u>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	-----------------	--------------------------------	--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K-성장리더스**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집합투자기구명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베어링 <u>수익마련</u> 증권투자신탁(주식)	베어링 K-성장리더스 증권투자신탁(주식)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베어링 <u>수익마련</u> 증권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②~③ (생략)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베어링 <u>수익마련</u>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베어링 K-성장리더스 증권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베어링 K-성장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현행과 같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K-성장리더스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명확화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집합투자기구명 변경	베어링 수익마련 증권투자신탁(주식)	베어링 K-성장리더스 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명확화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8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며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업종별 대표기업 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8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며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대표 성장기업 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투자비용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 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